

大學入試政策：其 理想과 現實

黃 禎 奎

(서울大 教育學科)

1. 問題의 提起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한다. 政治의 氣流와 社會의 에토스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고들 한다. 教育하는 일에서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教育政策에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大學入試制度가 1969년에 '大學入學豫備考查'라는 국가고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 입시 제도가 여러 가지 형태의 構造의 骨格, 內容과 方法에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그 나름으로 그 시기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教育的 次元의 고려, 社會的 문제의 수렴이라는 어려운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學入試는 어차피 고교 졸업생들을 모두 대학에 입학시킬 수 없는 條件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葛藤機能을 大前提로 하고 있다. 大學入試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요구되는 能力과 資質을 평가하여 入學 適格者를 가려내는 '選拔的 機能'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高等學校 教育課程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敎育的 機能'을 수행해야 한다는 二重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選拔的機能은 학생의 능력이나 [자질을] 가능한한 妥當

하고 銳利하게 辨別함으로써 선발에서의豫測能率,豫測效果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최대의 標的인 반면, 教育的機能은 모든 고교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적, 내용을 충실히 성취하도록 하려는 것을 최대의 豐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辨別, 差別, 分化, 等級化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選拔機能과 教育目標의 달성, 이에 따른 학생 능력의 同質化·等質化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教育的 기능 사이에는 언제나 잠재적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入試政策이 있다면 그것은 神話와 現實을 합치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大學入試制度는 이 두 가지 기능 사이에 적절한 수준의 緊張된 調和를 이루려는 制度的 表現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동안 이를 위해 學力考查, 內申制度, 大學의 獨자적 選拔自由權이라는 세 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함께 존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學力考查가 國民적 利害와 關心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內申制度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교육적 기능을 발효시킨 제도적 표현이며, 大學의 獨자적 선택과목 결정이나 加重值 적용, 채점과 查定方法의 결정 등은 대학의 選拔自由權을 발효시킨 제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制度的 表現은 동시에 우리 사회

가 指向하고자 하는 社會的 價值를 그 밑에 깔고 있다고 해석된다. 學力考査는 학생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同一한 尺度 위에서 그 業績, 成就, 成績의 순위를 결정하려는 '自由'의 개념이 그 근간이 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內申制度는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수학했건, 어느 학교에서 수학했건 그러한 踏屬變數에 관계 없이 동일한 準據 위에서 갖은 評價를 부여하려는 '平等'의 개념을 실현하려는 제도적 표현이며, 大學의 獨자적 체점, 檢定制度의 도입은 대학이 마땅히 가져야 할 獨立性과 自律性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理念의 價值가 협행 大學入試制度에 의해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其實 이 세 가지 理念의 가치는 어느 한 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 쪽이 위축되는 逆函數의 관계를 갖는 성질이라는 데 그 調和點을 찾기 힘든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大學의 自律權·獨立權이 대학 입시 제도에서 輕視되거나 배타적 變數로 타루어져 왔다는 大學人の 共感帶의식이 깊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한 대학인의 저항과 거부감을 축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2. 무엇을 노려야 하는가?

大學入試制度가 균원적으로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진작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論議에 초점을 맞추면 그 意見은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의견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의견인 경우도 많다.

大學入試制度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論議를 보면 教育理論이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순수한 原理, 原則에 입각하여 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微視的 視角과 입시 제도를 사회 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입시 제도를 해결하는 巨視的 視角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微視的 視角에서는 입시 제도 자체의 교육학적 논리의 整然性에 더 비중을 두고 그것을

고집하고 巨視的 視角에서는 입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전제 조건을 비롯하여 입시 제도가 사회에 주는 영향과 그것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중요시한다. 입시 제도의 개선은 교육학적 이론에만 집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전제 조건이나 사회 여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두 가지 視角이 한 쪽에서는 理想과 또 한 쪽에서는 現實을 중시하면서 적절히 緊張된 調和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러한 視角에서 협행 大學入試制度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大學의 自律性伸張, 社會正義의 실현, 選拔方法의合理化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大學의 自律性을伸張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협행 大學入試制度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각 大學이 당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學生을 選拔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주체적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을 들 수 있다.

어떤 형태의 組織體이건 그 조직체를 유지·발전시키고, 그 조직체의 생존과 필수적으로 직결되게 마련인 要求의 하나가 그 조직체에 필요한 人的資源을 選拔, 訓練, 配置하는 일이다. 大學이라는 조직체도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개방사회, 자유사회, 경쟁사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조직체의 자유로운 意思決定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조직체의 생존, 유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원리는 정치 집단, 경제 활동을 위한 기업체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大學이라는 조직체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협행 입시 제도는 大學入學 學力考査를 통해 국가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內申制를 통해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고교 교육의 성취도 수준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대학은 주어진 결과에 따라 學生 定員의 범위내에서 '選拔作業'만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같은 제도 속에서는

大學의 自律性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大學이 신입생의 선발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대학의 自律性과는 적절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학이 선발 과정에서 裁量權・決定權・查定權을 갖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대학이 놓여 왔던 역사적 상황 논리에 비추어 보아 마땅히 존중되고 회복되어야 할 권리로 보아야 한다.

둘째, 대학에서 新入生을 선발하는 과정이 社會正義의 실현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社會正義의 실현이라는 문제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마땅한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 로울스(John Rawls)가 제안하는 正義論의 핵심적 사상인 配分的 正義는 각자가 자신의 '應分의 몫(deserts)'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나 제도는 理想社會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必要條件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지칭한다. 만약 한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철저하게 利他的 이거나 철저하게 利己의 경우, 이같은 配分的 正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 사회가 개인이 원하는 것을 고루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풍요하거나 아무도,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면 이 또한 配分的 正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대학 입시'라는 교육 제도, 사회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실의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理想의 完全性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正義의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대학 입시 제도의 선발 과정이 전통적으로 중요시 했던 準據는 결과에 치우쳐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학업 성취의 總決算의 指標로서 학력고사 성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基準은 그 밑에 能力과 努力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能力이라는 개념은 대개의 경우 이미 주어진 조건이거나 적어도 그 배경에는 가정적・사회적 不公正의 集約體로서 형성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努力이라는 기준 역시 극히 主觀的일 뿐 아니라 이 또한 사회적 不公正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結果 못지 않게 過程과 節次에서의 正義를 正義實現의 規範의 準據로 함께 채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內申制度는 이같은 의미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한 가지 수단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의 실현의 규범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 각 학생이 어차피 피할 도리가 없는 지역, 학교, 성별에 관계 없이 그에 상응하는 評價를 해주려는 노력은 이미 외국의 대학 입시에서도 '추천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명백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內申制度는 그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이 점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세째, 選拔方法 및 過程의合理化를 시도해야 한다. 대학 입학 고사에서 채택되고 있는 학력고사, 내신 제도, 대학의 독자적 선발, 志願方法, 前後期 配定 등 모든 방법에서 아직도 合理性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 결함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학력고사가 全科目에 걸친 學力評價이기 때문에 妥當性보다는 客觀性과 信賴性, 經濟性이라는 기준이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현상이나, 內申制度를 위해 산출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합리적인가는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現實과 神話의 密語

위에 제시한 세 가지 準據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理想의 大學入試制度가 가능할련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神話의 現實化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準據는 調和 속에 응축시킬 수 있는 속성이기보다 서로 갈등을 빚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한 쪽의 準據를 극대화시키면 다른 한 쪽의 準據는 極少化되거나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大學入試制度의 실현은 실제로 이 세 가지 準據의 대화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현실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에서 몇 가지 代案들을 제시해본다.

1) 大學入試制度의 構造

대학 입시제는 학생 선발의 意思決定權을 최

대한 대학에 일임하는 방향에서의 制度的 表現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大入 學力考查의 採點權과 査定權을 갖는 형태로는 학생 선발에서의 大學의 意思決定權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약된다고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 선발 제도에 관한 한 각 大學이 완전히 獨自的이고 自律의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 입학 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고, 사회 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문제의 개선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大學入試制度는 다음 네 가지의 장치가 그 骨格 構造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學力考查(현재와 같이 中央教育評價院에서 출제, 채점)
- ② 本考查(大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③ 內申成績(고등학교에서 자료 제공)
- ④ 面接考查(大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學力考查는 현재 중앙교육평가원(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되, 출제와 채점을 모두 평가원에서 담당한다(자세한 개선책은 뒤에 언급함). 內申成績도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작성한다(이 제도의 개선책도 뒤에 언급함). 本考查는 각 대학이 독자적·자율적으로 학문 계열이나 單位 大學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教科目에 대한 考查를 실시하도록 한다. 面接은 지금까지 실시 하던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각 學科의 성격에 따라 체계적인 면접을 실시하고 엄격·공정하게 평가된 결과를 査定의 준거로 쓰기 위한 面接考查를 지칭한다.

대학 입시 제도는 이 네 가지 考查가 근간 골격을 이루도록 하고, 각 대학에서 이 네 가지 考查를 어떻게 반영하며,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는 것은 완전히 大學의 독자적 의사 결정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大學에서는 이 네 가지 考查의 결과를 모두 적정한 비율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느 대학에서는 本考查의 성적 결과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학력고사 성적과 본고사만의 비분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갖는 특징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가장 妥當하고 信賴스러운 情報를 모두 제공한다는 데 있으며, 이 같이 주어지는 情報를 어떻게 또 얼마나 학생 선발에 반영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도가 채택되면 각 大學마다 다양한 선발 방식이 채택되어 표면적으로는 混亂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劃一性보다는 多樣性이 민주사회, 개방사회의 특징이라는 특징을 수락한다면 이는 권장되어야 할 현상이지 통제되어야 할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결국 대학 사이에 善意의 경쟁 의식을 조성하고, 그것이 곧 대학 발전과 대학의 개성을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은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劃一的 制度의 雨傘 아래에서 키 큰 대학도 키 작은 대학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그러한 결과는 모두가 個性 없는 대학으로 발전되어 온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대학 입시제도나 졸업 제도만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좀더 넓게는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他律의 支配原則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보여진다.

2) 大入 學力考查

大入 學力考查의 合理性·妥當性을 再檢討해야 한다. 현재 1년에 한 번 일제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硬性(hard)의 학력고사를 1년에 가능하면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과하는 비교적 軟性(soft)의 학력고사로 전환시키기를 제안한다. 이 말은 현행 학력고사가 고교 교육을 완성한 학생에게 과하는 최종적인 학업 성취의 평가를 측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단히 硬性의 학력고사에서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를 측정·평가하는 修學能力考查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1년에 한 번 졸업을 앞두고 실시하는 형태보다는 3학년이 되면 각자가 준비

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考査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각 학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단회하기 위해 두 번 정도 受檢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어야 한다. 미국의 SAT나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 가기 위해 치르는 TOEFL이나 GRE의 考査制度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大學入學 學力考査는 數科目에 기초한 수학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성질의 것이어야지, 미국의 SAT와 같은 검사의 성질과 同一視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學力考査는 大學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本考査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 選擇型 問項으로 출제하고, 採點도 경제적·능률적으로 하도록 되어야 한다.

문항의 성격도 현재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速度 檢査의 형태를 지양하고, 각 개인의 수학 능력을 충분히 측정·평가할 수 있는 力量 檢査(power test)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問項의 妥當性과 信頼性을 높이기 위해 '數科書' 위주의 출제를 지양하고 '敎育課程' 위주의 출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문항의 형식도 '正答型' 위주를 지양하고 '最善答型'을 겸용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성질을 모두 갖춘 學力考査가 된다면 '현재의 學力考査'에 대해 전문가나 일반인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大學 本考査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本考査는 국가에서 과하는 학력고사와 서로 補完的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그 역할과 성질을 정립해야 한다.

大入 學力考査는 전국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는 지원자 전원을 假想的 대상으로 한 검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能率性과 經濟性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문항을 이용하건 그것은 選擇型이어야 하고 客觀的 採點(機械에 의한 채점)이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大學에서 실시하게 된 本考査는 選

擇型 문항을 완전히 배제하고, 論文型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論文型 형태의 문항이 選擇型 문항으로는 비교적 측정·평가하기 어려운 思考力, 機敏力, 総合力, 應用力, 批判力 등 高等精神機能에 속하는 정신 능력을 측정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격적인 論文型 출제가 어렵다면 準論文型(quasiessay type) 형태로 출제함으로써 그 代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論文型 형태는 각 數科目에 관련된 논문형의 출제도 가능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分野別의 汎論文型 문항도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論文型 문항을 어떻게 어느 정도 출제하여, 몇 科目을 본고사로 출제할 것인가 하는 의사 결정도 전적으로 대학의 독자적·자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內申制度

大學 入試制度의 전형 기준의 하나로 內申制度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독특한 社會的 與件, 教育的 與件(예컨대 過熱 課外授業의 폐단,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正常化 요구 등) 때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 內申制度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贊反, 呼應과 批判이 엇갈리는 兩極化 현상을 보여 왔다. 이 제도는 단지 학생의 고교 교육과정 성취도를 대학 입학 전형 기준의 일부분으로 반영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사회 이념과 철학,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에까지 관련되는 문제로 부각된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內申制度는 그것을 각 대학이 입학 전형의 중요한 한 가지 情報源으로 이용한다는 입시 제도의 구조 속에서 보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혈행 內申 成績의 산출 방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수정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는 강력하다. 예컨대 內申 等級의 調整, 學科 點數의 總點과 內申 等級의 不一致 현상 등은 좀 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地域間·學校間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内申成績制度는 不合理하다는 견해는 内申制度 자체가 想定하고 있는 교육적 및 사회적 大前提를 부인하는 발상이며, 이는 곧 社會正義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은 오히려 이 같은 内申資料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의해 각 대학이 원하는 자율성·독자성을 신장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面接考査

현재 각 대학에서는 대단히 형식적인 面接考査를 치르고 있진 하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대학 입학 선발에서의 査定資料로 이용되는 경우는 희귀하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面接考査는 본격적이며 本質에 충실한 면접고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입학 査定의 자료로 활용하자는 데 있다. 이 면접고사는 학생의 지원하는 각 學科의 教科內容, 適性, 態度나 價値觀 등을 측정·평가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각 學科나 학문 분야의 교수가 직접 면접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금년에 한두 개 대학이 이같은 방법에 의한 면접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效果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는 데는 등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面接考査는 그것을 학문적 성취 가능성의 측정 자료로 이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보다 教育的 次元의 시작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制度가 있으므로 해서 각 학과나 학문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의 태도가 보다 진지해 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사회적·정치적 변동과 풍토의 영향 때문에 거의 下限點에

이르른 大學敎授의 教權 確立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계속 권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체나 회사에 취직할 때의 취직 시험에서도 면접에 의한 판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정 정보로 이용되는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대학이 이 제도의 활용을 도의시한다는 것은 教育的 責務의 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맷음말

반복해서 말하지만 大學入試制度에 관한 理想的 代案이라는 神話는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있다고 하면 現實에서 발생한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代案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 제의한 入試制度의 構造나 골격, 내용도 한 개의 次善的 代案일 뿐이다. 그러나 어떠한 制度이건 그 제도가 가장 가치를 두는 몇 가지 특징은 있기 마련이다. 위에서 제시한 代案은 대학의 自律性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社會正義를 폐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入試制度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비교적 공감대가 높은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의 自由나 自律性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資格과 權利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放縱과 無秩序의 逆機能으로 작용하여 끝내는 또 다른 새로운 規制와 他律(이것은 “비단 官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社會의 여론의 압력일 수도 있다”)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 大學人 스스로가 같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